

의안번호	2214306
의 퇴 인	이용우의원
회 답 일	2026. 1. 9.
추 계 번호	25B6216
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0조(벌칙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제4항) 2.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<u>아니한 자</u> ※ 보안검색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 삭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제5항) 2.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<u>아니한 자</u> ※ 보안검색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 삭제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0조(벌칙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¹⁾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,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, 통과 승객·환승 승객 등에 대해 보안검색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, 해당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 5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
- 개정안은 ‘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,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, 통과 승객·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소홀히 한 자’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
- 현행 형벌에 따른 벌금은 법무부의 수입이 되나, 법무부에 따르면 형벌 규정에 따른 벌금 수입을 형벌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,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감소 등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1) 제15조(승객 등의 검색 등)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,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.

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,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,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.

제16조(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) ① 공항운영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·절차·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,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 내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은 화물터미널운영자가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·절차·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,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7조(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)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서 내린 통과 승객, 환승 승객,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.

제50조(벌칙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2.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2.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